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98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보훈단체의 지원(안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민간의 참여조성(안 제9조)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불임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1. 근거법령 1부.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본 1부.
3.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개재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 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시가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제8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훈 시설건립·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회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법률 제7572호 신규제정 2005. 5. 3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 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000호 (2007년 4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도의 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개재 등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도가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제8조(단체지원)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훈 시설건립·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회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143 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8. 31

제 천 시 장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사항을 제천시장(참조: 시민복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시민복지팀(전화 043-641-5672 fax 641-56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